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2. 7. .
제 출 자 : 성주군수 (인)

1. 제안이유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간에는 승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에게는 최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종합 교통발전 위원회를 군에 설치하여 건전한 지역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음.

2. 주요골자

ㅇ.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군의 조례로 제정운영
ㅇ. 위원회 명칭은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로 함.
ㅇ.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
ㅇ. 위원회 구성은 지역출신 도의원, 군의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학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 19인 이내로 구성
ㅇ. 기능은 지역교통발전 및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ㅇ. 회의는 교통민원 및 지역교통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이 있을시 소집 개최
ㅇ. 기타 위원회설치운영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함.

3. 참고사항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나.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담당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